

# 유아_아동_성인 섬유제품의

## 안전관리 (안전확인_공급자적합성)

2017. 06. 23 (금)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장경화**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Contents

I


1 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취지 및 배경

2 KC 안전관리제도 체계

3 유아용 섬유제품 개정 내용

4 공통안전기준 개정 내용

5 인증관리시스템 소개

# Contents

II

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 적합성)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가정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 확인)

3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 구비서류

## 아동복 NPEO 검출










**※ 유아용 섬유제품 노닐페놀류(NP, NPEO) 추가**

- 환경부에서 **섬유·가죽 가공 용도로서 사용금지**
  **`제한물질'로서 제한 범위 확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6-446호(2016. 5. 26.) )
**비고)** 현 시행 :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2017.4.14.]

-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안전 기준을 반영하여 유아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관련항목 신설**
  **⇒ NP, NPEO 총함량 100 mg/kg 이하**

- **노닐페놀류는 계면활성제로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며, 노출 시 내분비계 장애 일으킬 수 있음**

# Ⅰ - 1 | 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취지 및 배경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내용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6-446호 (2016. 5. 26.) )**

|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 기존 | 개정 |
|---|---|---|---|
| 제한내용 | **노닐페놀 [Nonylphenols, Nonylphenol ethoxylate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6-5-6** |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br>가.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br>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br>(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한물질 | | **총 6종** | - 국내 유통중이나 제한물질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노닐페놀류 **8종**을 **추가 지정**<br>- **총 14종** |

**비고)** 현 시행고시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2017.4.14.))

## 리튬이차전지 폭발사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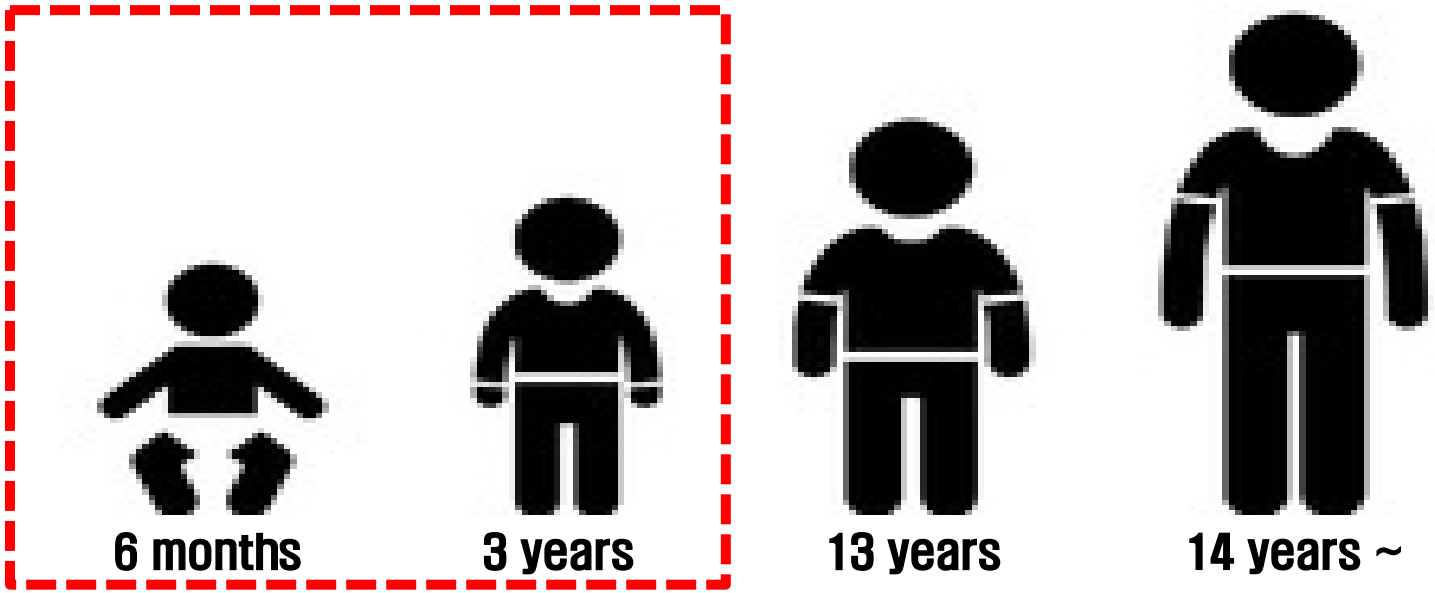


※ 국내 제품사고조사  연구보고서 및 해외 사고사례 고려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및 주의경고사항 신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정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대상 | 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이 매우 높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 검사 필요 | 위해 정보 제공, 표시만으로도 안전사고 방지 가능 |
| 안전관리 | 제품검사 + 공장심사<br>안전인증기관 | 제품검사<br>공인시험·검사기관 | 자체확인<br>제3자 기관 등 |
| 품목 | | ↓<br>유아용 섬유제품 | ↓<br>아동용 섬유제품<br>어린이용 가죽제품 |

## 안전요건의 변경 및 개정내용 (2018년 2월 1일 출고·통관부터 적용)

| 구분 | 개정내용 |
|---|---|
| 알러지성 염료 적용 | 기준명확화 (50mg/kg 이하) |
| 노닐페놀(NP,NPEO) 총함량 | 시험신설항목 (기준 : 100mg/kg 이하) |
| 가죽원부자재 안전요건 적용 | 기존+(염소화페놀류, 6가크롬,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br>→ 안전요건 적용확대!! |
| 면적대비 5% 이하<br>중량대비 1% 미만 섬유부위 시험적용 |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 대상 |
| 모델의 구분 | - 중의류 신설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침구류, 양말류 등 10가지)<br>- 동일모델구분 ( 구분별→종류별 ) |
| 니켈용출량 |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금속에 한함( 적용기준 완화 ) |
| 전기적 안전요건 | 2차 전지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
| 품질표시사항 |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 |

##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 유해물질명 | | 허용치(기존) | 허용치(개정) | |
|---|---|---|---|---|
| 폼알데하이드 (mg/kg) | | 20 이하 | 20 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 (mg/kg) 2) | DBT(dibutyltin) | 1.0 이하 | 1.0 이하 | |
| | TBT(tributyltin) | 0.5 이하 | 0.5 이하 | |
| 아릴아민 (mg/kg) | | 각각 30 이하 | 각각 30 이하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 | 0.1 이하 | 0.1 이하 | |
| 방염제 | | 사용하지 말 것 | 사용하지 말 것 | |
| 총 납 함유량(mg/kg) | | 90 이하 | 90 이하 | |
| 총 카드뮴 함유량(mg/kg) | | - | **75 이하** | **추가** |
| 알러지성 염료 (mg/kg) | | **사용하지 말것** | **각각 50 이하** | **기준값 적용** |
| pH | | 4.0 ~ 7.5 | 4.0 ~ 7.5 | |
| 니켈(Ni)의 용출량 (㎍/㎠/week) | | 0.5 이하 | 0.5 이하 | |
|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 | - | **100 이하** | **신설**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 | 0.1 이하 | 0.1 이하 | |

## 모델 구분의 변경

모델 구분의 세분화

| 구 분 | 종 류 |
|---|---|
| 외의류 |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조끼, 톱바, 우주복, 가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
| 중의류 |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 |
| 내의류 |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
| 침구류 |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페트,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
| 신발류 |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br>(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
| 양말류 |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
| 장갑류 | 장갑, 팔토시 |
| 모자류 |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빕 |
| 가방류 |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
| 신생아용품 |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풋머프,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힙시트, 노리개젖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

## 동일모델 구분




| 기존(구분별) | 개정(종류별) |
|---|---|
| ▪ 외의류<br>▪ 내의류<br>▪ 양말류<br>▪ 신발류<br>: | ▪ 티셔츠, 바지, 원피스<br>▪ 팬티 및 팬티류, 잠옷<br>▪ 양말, 타이즈, 발토시<br>▪ 운동화, 슬리퍼, … |

✓ 공통사항 : 제조국, 제조업체 / 개별기준(부속서 상의 모델 구분) : 종류, 조성섬유

※ 섬유 원단의 색상이 다른 경우
⇒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 진행, 만족 시 동일모델로 인정!!

※ 종류가 다르더라도 조성섬유, 색상이 같고, 동일방법 제조 및 가공된 원단 사용하였을 경우
⇒ 동일모델로 간주!!

## 유해물질 안전요건 변경-세부사항

### ■ 알러지성 염료 적용 섬유 명시

-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

### ■ 가죽이나 모피 소재 시험부위 시험항목 확대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항목 제외(~'18.1.31.), 가죽 시험 6개 항목 적용('18.2.1. 출고/통관 제품)

- 가죽이나 모피소재가 면적대비 5% 이하, 중량대비 1% 미만일 경우 시험 제외 문구에는 해당되지 않음

⇒ 유해물질 적용 대상

### ■ 시험부위 적용 예외 적용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대비 5% 이하,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전체 중량대비 1% 미만일 경우 제외

(단,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

## 유해물질 안전요건 변경 – 예시 1

**유아용 섬유제품(면적대비 5%이하)**





- 조섬섬유: 폴리에스터 / 면
- 부위: 조리 섬유원단
- 적용항목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노닐페놀류(NP, NPEO)총함량

## 유아용 섬유제품 시험부위 설정 예시



면 100%

### ▶ 유해물질 안전요건 (원단/섬유)

- pH
- 폼알데하이드
- 노닐페놀
- 방염제(방염처리된 경우)

### ▶ 물리적 안전요건 (단추)

- 작은부품부착강도
- 작은부품
- 가장자리
- 날카로운 끝

### ▶ 유해물질 안전요건 (단추/프린트)

- 납,카드뮴(단추,프린트)
- 프탈레이트가소제(6종)(단추)
- 유해원소용출(8종)(단추,프린트)
- 유기주석화합물(TBT,DBT)(프린트)

## 전기적 안전요건의 신설(1)

1.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KC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파손을 고려하여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내충격 방지용 독립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 제품 도면 등).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전기적 안전요건의 신설(2)

### <리튬이차전지 >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 예시

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
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
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 품질표시사항 변경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경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중 하나표시

5. 치수 (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품사용연령

**표시사항**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

품　　번 : 06 AB-CD
신체치수(㎝) - 권장사항
가슴둘레 : 85 – 93
허리둘레 : 70 – 80
키　　: 157-170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겉　　감 :　　면　　100%
안　　감 : 폴리에스터　100%
충 전 재: 폴리에스터　100%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자명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입자명 : 카트리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전화번호 : 02-3668-3000
제조국명 : 중국
제조년월 : 2015. 10
제품사용연령 : 36개월 미만

주의 경고 문구 삽입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

**예　시**

## 안전요건의 변경 및 개정내용 (2017년 8월 1일 출고·통관부터 적용)

| 구분 | 개정내용 |
|---|---|
| 안전기준 우선순위 명확화 | 개별안전기준 우선적용(개별안전기준→공통안전기준) |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 **신규시험항목 적용**<br>(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 경우 정상 사용시 **피부접촉 부위** 한함) |
| 유리 | **36개월 미만 → 유리 사용 금지**<br>**36개월 이상 → 유리 시용 시 경고문구 포함** |
| 작은부품 |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 경고문구 표시**<br>**72개월 이상 → 시험대상 제외** |
|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 **96개월 이상은 시험대상 제외** |
| 전기적 안전요건 |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리튬 2차 전지**(니켈계 전지 제외)<br>⇒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 갖추어야 함 |
| 품질표시사항 |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제품 크기 체중 등의 한계 표시** |

## 서류비치 법적의무 (시행규칙 제34조)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 ·수입업자는 해당 서류 5년간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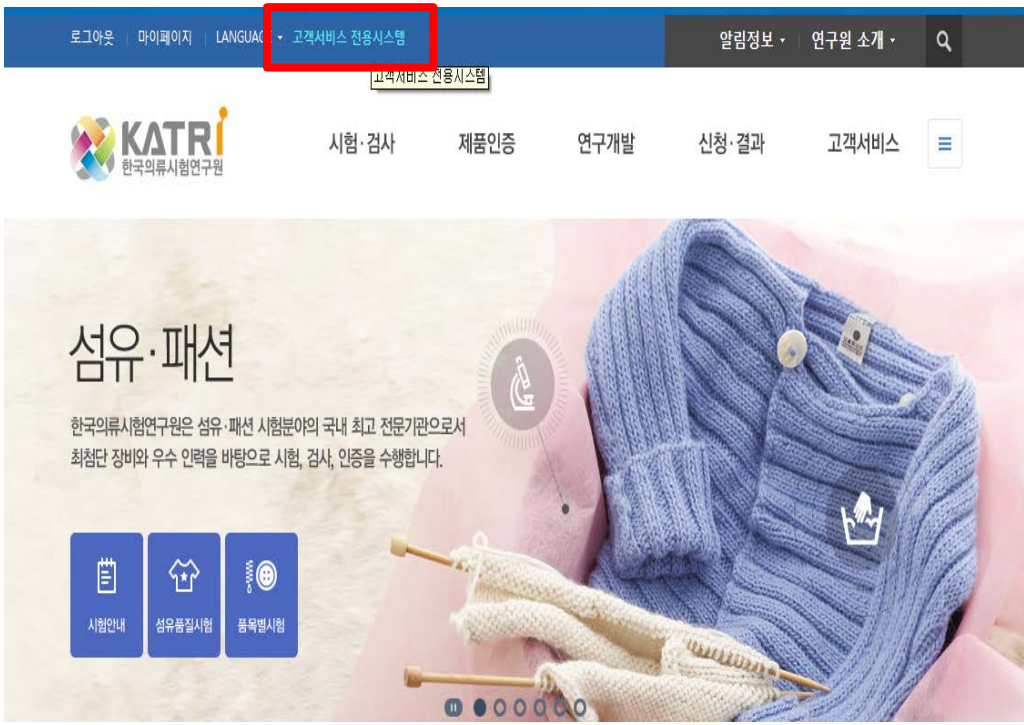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2. 시험 결과서(사진 포함)
3. 안전확인신고 확인증

**<KATRI에서 5년간 비치>**

KATRI

**전자문서보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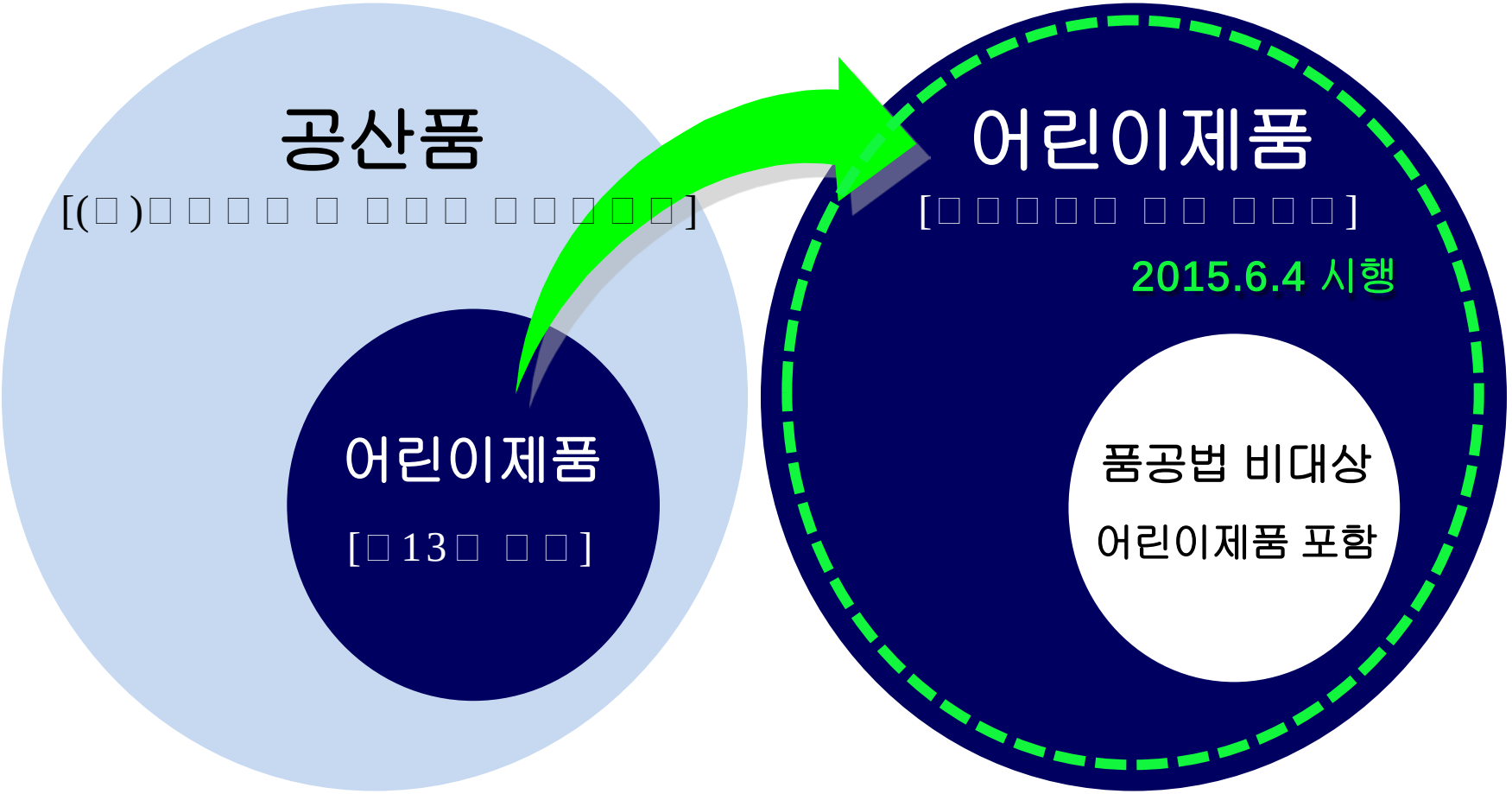
www.katri.re.kr




※ 미 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법 제43조 제3항 제15호]

# II-1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어린이제품 별도 안전관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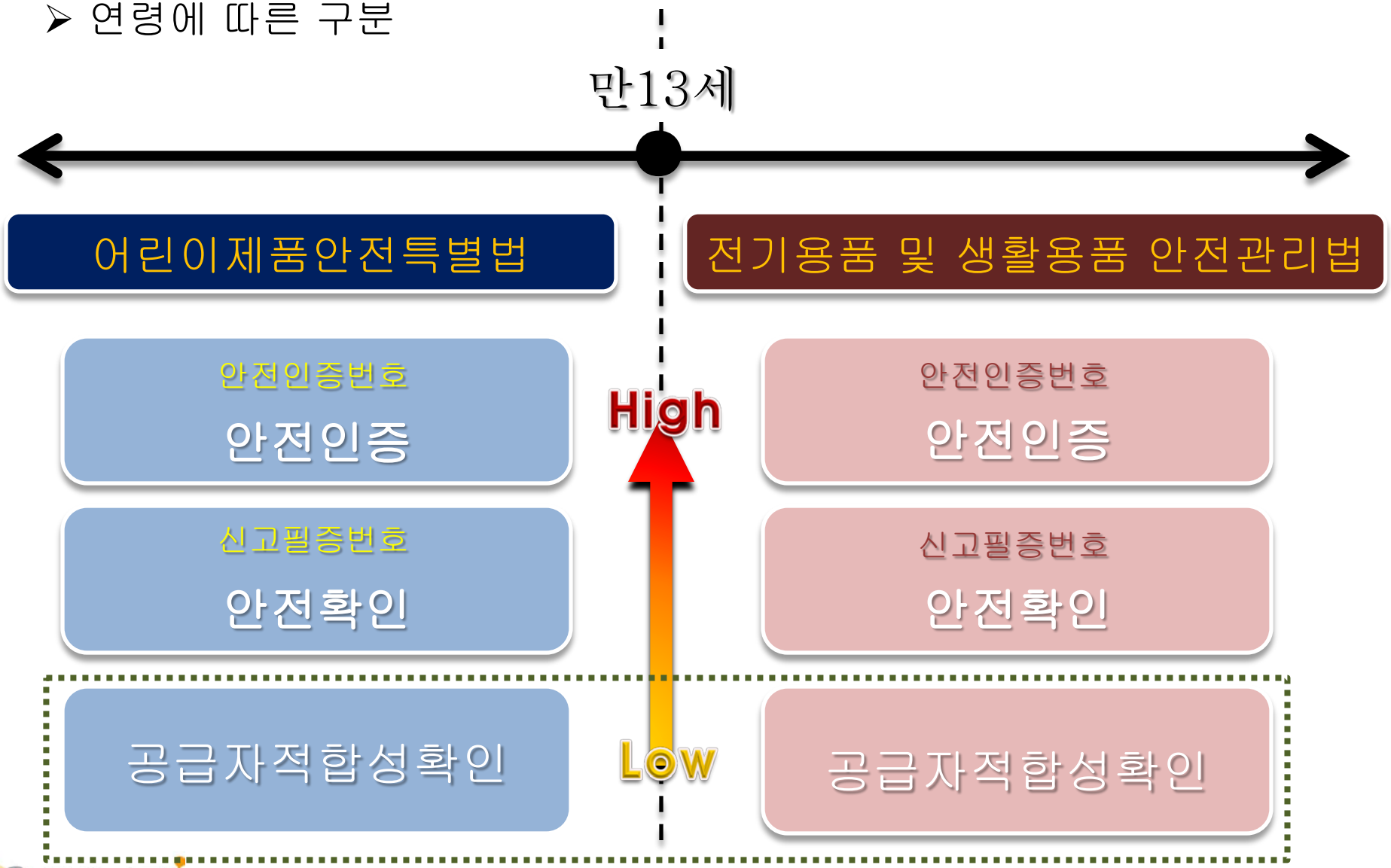
# II-1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위해수준에 따른 안전관리 차별화



# II-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연령에 따른 구분



# II-1 | 아동용 섬유제품 주요 변경사항

## ➢ 주요 변경내용

| 구분 | 변경사항 | 적용항목 | 개정 전 후 비교 | |
|---|---|---|---|---|
| | | | 기존 | 개정 |
| 1 | **신규유해물질 항목 추가** | NP, NPEO 총 함량 | 적용대상 아님 | 100 mg/kg 이하 |
| 2 |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완화** | 알러지성 염료 | 사용하지 말것 | 각각50mg/kg 이하 |
| 3 | **가죽소재 시험 항목 확대 적용** | 천연모피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카드뮴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카드뮴 +염소화페놀류, 6가크롬,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
| | | 천연가죽/ 인조가죽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카드뮴, 유기주석화합물(TBT), 프탈레이트계가소제(3종)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납, 카드뮴, 유기주석화합물(TBT), 프탈레이트계가소제(3종) +염소화페놀류, 6가크롬,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
| 4 | **피부 지속적 접촉** | 니켈 용출량 | 금속제품 적용 |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 섬유부위 중 제품면적 대비 5% 이하, 중량 1% 미만 | 제외 | 제외 (제품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적용대상) |
| 5 | **전기적 안전요건** | | - |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2차 전지 폭발 가능성 고려) |
| 6 | **품질표기사항 추가** | 사용연령 | - | 사용연령 반드시 추가 |

➢ 적용 일시 : 2018 년 2월 1일 출고 및 통관 대상 제품 (추후 변동 가능)

# Ⅱ-1 | 아동용 섬유제품 주요 변경사항

## ➢ 아동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 유해물질명 | 허용치 |
|---|---|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 아릴아민 (mg/kg) | 각각 30 이하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 0.1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tin, TBT) (mg/kg) | 1.0 이하 |
| 방염제 | 사용하지 말 것 |
| 총 납 함유량 (mg/kg) | 90 이하 |
| 총 카드뮴 함유량(mg/kg) | 75 이하 |
| 알러지성 염료 (mg/kg)<br>(염색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 사용하지말것 ->  각각 50 이하 |
| pH | 4.0 ~ 7.5 |
| 니켈(Ni)의 용출량 (㎍/㎠/week) | 0.5 이하 |
|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 100 이하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 0.1이하 |

# Ⅱ-1 | 아동용 섬유제품 품질표시 사항

➢ 사용연령 반드시 표기

**기존**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 사용한 제품)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 사용한 제품)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사용연령

# II-1 | 아동용 섬유제품 품질표시 사항

## 섬유 의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1. 섬유의 혼용률
   -겉감 : 면 100%
   -안감 : 폴리에스터 100%
2. 품번 : 카트리 의류
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AB물산
4. 제조국명 : 중국
6. 제조연월 : 2017. 01
7. 신체치수(cm) - 권장사항
   가슴둘레 : 85 - 93
   허리둘레 : 70 - 80
   키 : 157-170
8.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문구 추가)



9.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10. 제품사용연령 : 3세 이상

## 섬유 가방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1. 섬유의 혼용률
   -겉감 : 나일론 100%
   -안감 : 폴리에스터 100%
2. 모델명 : 카트리 가방
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AB물산
4. 제조국명 : 중국
5. 제조연월 : 2017. 01
6.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문구 추가)
   ①물세탁 불가 ②드라이클리닝 불가
   ③염소,산소계 표백제 사용 불가
   ④다림질 불가
8.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9. 제품사용연령 : 5세~7세

## 섬유 신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1. 섬유의 혼용률
   -겉감 : 나일론 100%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창 : 합성고무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AB물산
4. 제조국명 : 중국
5. 제조연월 : 2017. 01
6. 치수 : 240 mm
7.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문구 추가)



8.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9. 제품사용연령 : 5세~7세

# Ⅱ-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 가전용품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비가전 생활용품 (전기용품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년 1월 27일 공포,
2017년 1월 28일 시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 통합 및 명칭 변경)

# II-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생활용품 분류 용어 변경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제품시험 + 공장심사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공인 시험기관 시험 및 신고

안전확인신고번호:

안전확인

## 안전품질표시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 안전기준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
(자체확인 혹은 제3자 의뢰)

공급자적합성확인

# II-2 | 가정용 섬유제품

## ➢ 부속서 명칭 변경

안전·품질표시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Textile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 , 한복, 학생복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
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0055 노년 여성의 여성복 치수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9 모자의 치수
KS K 0088 양말의 치수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Textile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 , 한복, 학생복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
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0055 노년 여성의 여성복 치수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9 모자의 치수
KS K 0088 양말의 치수

# II-2 | 가정용 섬유제품

➢ 적용범위

| 구 분 | 품 목 |
|---|---|
| 내의류 |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br>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옥류, 잠옷류, 양말류, 복대 등 |
| 중의류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br>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 |
| 외의류 |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br>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가죽신발제외),<br>(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 포함) |
| 침구류 | 잠을 자는데 이용하는 제품<br>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 등 |
| 기 타<br>제품류 |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br>가방, 쿠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으로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외 |

# II-2 | 가정용 섬유제품

## ➢ 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 유해물질명 제품명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및 침구류 |
|---|---|---|---|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
| 아릴아민 (mg/kg) | 30 이하 |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 | - | - |
| 유기주석화합물(mg/kg)TBT (tributyltin) | 1.00이하 |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 0.1이하 | | |
| 방염제 | 사용하지 말것 | | |
| 납(mg/kg) | - | - | - |
| 코드 및 조임끈 | - | - | - |
| 알러지성 염료 | 사용하지 말것 | - | - |
| pH | 4.0 ~ 7.5 | 4.0 ~ 7.5 | 4.0 ~ 9.0 |
| 니켈(Ni)의 용출량 | 0.5㎍/㎠/week이하 | | |

# II-2 | 가정용 섬유제품

## ➢ 품질표기 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cf. 운동화: 겉감/안감/창)

**2. 제조자명**(국산품) **또는 수입자명**(수입품)

**3. 제조국명**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 제품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명 기재. 국내 제조의 경우 한국산 등으로 표기)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 (숄, 가방, 커튼 등 일부 제품은 생략) (권장사항)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

☑ 세탁 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표시

☑ 박음질 표시가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할 경우(속옷,양말,장갑,수영복,체조복, 스카프,머플러,손수건,가발류,모자, 신발, 타올, 넥타이, 턱받이류)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

☑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 기입은 무관

## ➢ 품질표기 사항

### 1) 품질표기 사항 (혼용률 통일문자)

| 섬유명칭 | | 통일문자 |
|---|---|---|
| 면 | | 면 |
| 모 | 양모 | 모 |
| | 모헤어 | 모 또는 모헤어 |
| | 알파카 | 모 또는 알파카 |
| | 앙고라 | 모 또는 앙고라 |
| | 캐시미어 | 모 또는 캐시미어 |
| | 낙타 | 모 또는 낙타 |
| | 기타의 것 | 모 |
| 견 | | 견 |
| 아 마 | | 마 |
| 저 마 | | |
| 대 마 | | |
| 황 마 | | |
| 비스코스레이온 | 평균 중합도가 450이상인 것 |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
| | 그 밖의 것 | 레이온 |
| 모 달 | | 레이온 또는 모달 |
| 리 오 셀 | | 레이온 또는 리오셀 |
| 큐 프 라(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 | 레이온 또는 큐프라 |
| 아세테이트섬유 | 초화도가 92% 이상인 것 | 아세테이트 또는 트리아세테이트 |
| | 그 밖의 것 | 아세테이트 |
| 프로믹스섬유 | | 프로믹스 |

| 섬유명칭 | | 통일문자 |
|---|---|---|
| 아라미드 | 85% 이상의 아미드 결합 | 아라미드 |
|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 | 나일론 |
|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 | 비닐론 |
|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 | 비닐리덴 |
|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 | 폴리염화비닐 |
|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 | 폴리에스터 |
|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 | 아크릴 |
| | 그 밖의 것 | 아크릴계 |
|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 | 폴리에틸렌 |
|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 | 폴리프로필렌 |
|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 | 폴리우레탄 |
| 폴리크랄계 합성섬유 | | 폴리크랄 |
| 유리섬유 | | 유리섬유 |
| 탄소섬유 | | 탄소섬유 |
| 금속섬유 | | 금속섬유 |
| 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합성섬유 |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 폴리올레핀 |
| |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 80% 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 사용 |
| 전 각 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 | "지정외섬유"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 를 괄호를 붙여 부기 |

## ➢ 품질표기 사항

### 2) 품질표기 사항 (혼용률 표기 특이사항)

| |
|---|
| 1. 부분별 혼용률 분리 표기<br>☞ 제품이 겉감, 안감, 충전재, 배색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정해진 명칭 없음,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명칭 사용)<br>☞ 2종류 이상의 다른 원단을 사용한 경우 |
| 2. 혼용률 제외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외 내용 부기)<br>- 원단장식이나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율이 5%이하인 경우 |
| 3. 혼용율이 큰 것부터 2가지 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br>- 양말, 장갑, 수영복, 체조옷,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등(조성섬유가 2가지 이상에 한함)<br>ex) 1.면 2.나일론 3.기타 |
| 4. 운동화 : 겉감, 안감, 창(outsole)으로 구분하여 표시. 창 표시는 생략 가능 |

## ➢ 품질표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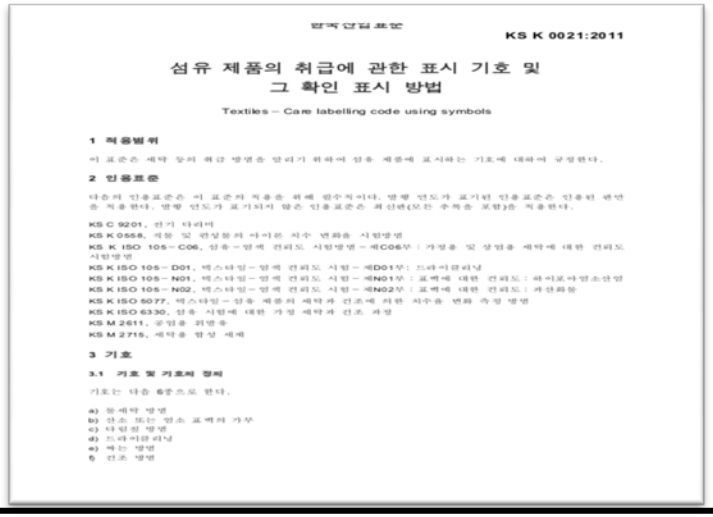
### 3) 품질표기 사항 (취급시 주의 사항-KS K 0021)

- 취급상 주의사항은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을 포함해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1)물세탁 방법 2)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3)다림질방법 4)드라이클리닝 5)짜는방법 6)건조방법
  7)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8)불꽃주의
  9)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부품 주의사항
  10)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 신발의 주의사항

- 기호는 KS K 0021에 따라서 표시

※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KS K 0021:201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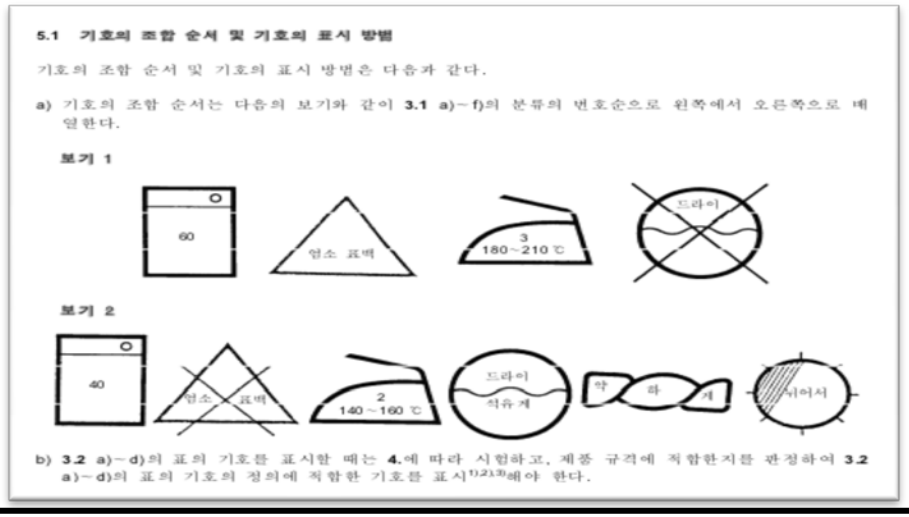
Textiles – Care labelling code using symbols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기호

3.1 기호 및 기호의 정의



5.1 기호의 조합 순서 및 기호의 표시 방법

기호의 조합 순서 및 기호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기호의 조합 순서는 다음의 보기와 같이 3.1 a)~f)의 분류의 번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한다.

보기 1

보기 2

b) 3.2 a)~d)의 표의 기호를 표시할 때는 4.에 따라 시험하고, 제품 규격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 3.2 a)~d)의 표의 기호의 정의에 적합한 기호를 표시[1)2)3)]해야 한다.

# II-3 | 아동용 섬유제품 구비서류

## ➢ 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II-3| 아동용 섬유제품 구비서류

## ➢ 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구비 서류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용두동) T : 02-3668-3000 F : 02-3668-2900 www.katri.re.kr 전자문서 전송서비스

### 시 험 성 적 서

신 청 자 :
주 소 :

KATRI NO :
접수일자 : 2017.04.27
발급일자 : 2017.04.28
용 도 : 제출용
PAGE(S) : 1 / 7

제 출 처 :
시 료 명 : 점퍼 1 점

▶ 시료명세

| | |
|---|---|
| 스타일번호 | |
| 제시 혼용률 | |
| 제시 취급상 주의 표시 | |
| 시험기준 | |
| 시험결과 | |

▶ 판정결과

| | 시료1 |
|---|---|
| 종합 판정결과 | |
| 비 고 :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비고 1. 이 성적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에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이 성적서는 당 시험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시험성적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 | |
|---|---|---|
| 확인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회사의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회사의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명 | |
| | 안전기준 상의 모델구분 | |
|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 적용안전기준 | |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공급자적합성 확인자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제 품 설 명 서

[ 제품 사진 또는 컬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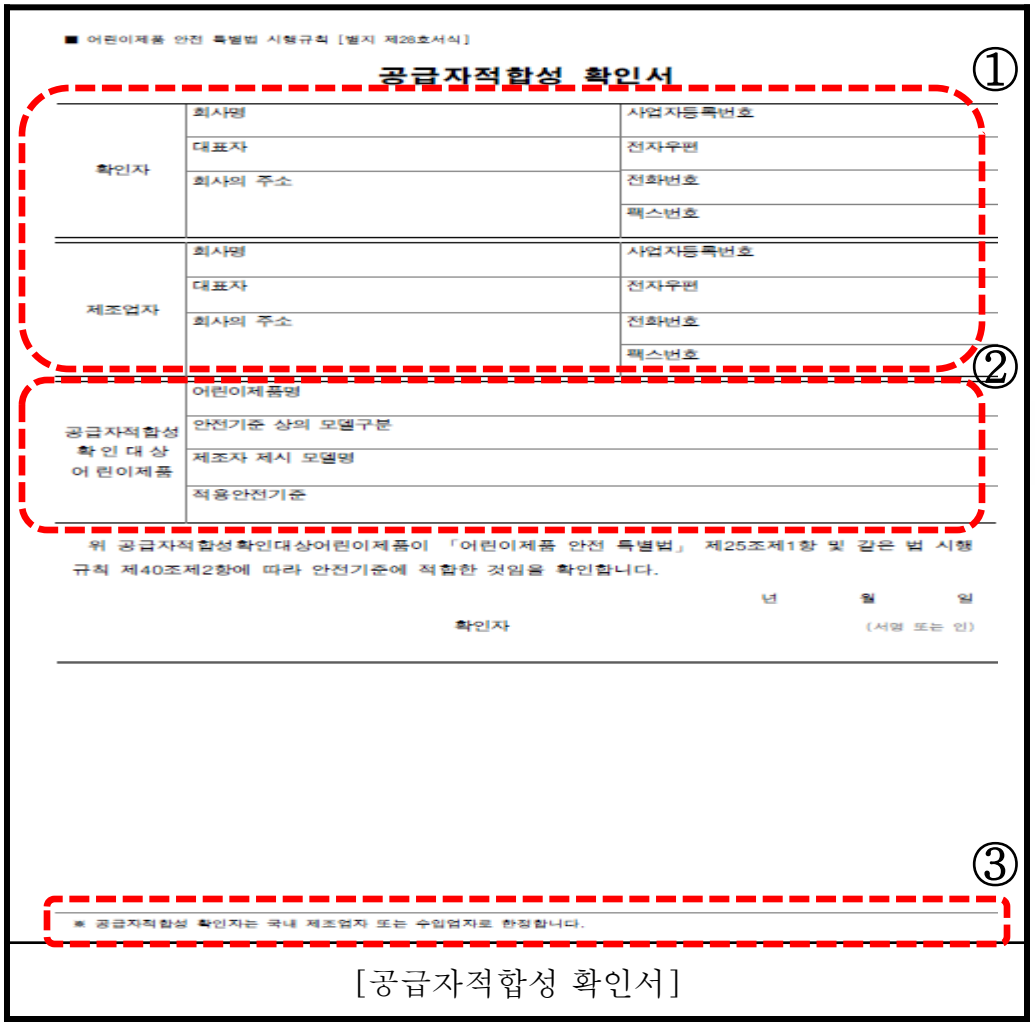


| | |
|---|---|
| 어린이제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 안전기준 상의 모델구분 | - |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적용안전기준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제품설명서(안)]

# II-3| 아동용 섬유제품 구비서류

##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기재 방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①

| | | |
|---|---|---|
| 확인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회사의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회사의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②

| | |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명 |
| | 안전기준 상의 모델구분 |
|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적용안전기준 |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③

* 공급자적합성 확인자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합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1. 확인자 및 제조업자

   ☞ 국내 제조업자 : 확인자 및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확인자

2.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안전기준 상의 모델구분
   : 내의류, 중의류 등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적용안전기준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3. 공급자적합성 확인자

   ☞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II-3 | 가정용 섬유제품 구비서류

## ➢ 가정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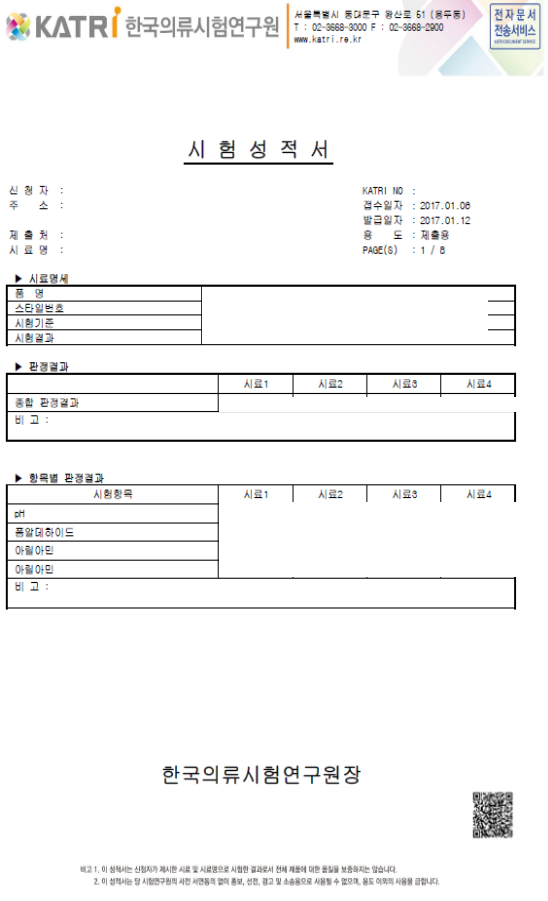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관련 서류 비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 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 17호 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 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17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 II-3 | 가정용 섬유제품

## ➢ 가정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 구비서류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용두동)
T : 02-3668-3000 F : 02-3668-2900
www.katri.re.kr

전자문서 전송서비스

### 시 험 성 적 서

신 청 자 :
주 소 :

제 출 처 :
시 료 명 :

KATRI NO :
접수일자 : 2017.01.06
발급일자 : 2017.01.12
용 도 : 제출용
PAGE(S) : 1 / 8

▶ 시료명세

| | |
|---|---|
| 품 명 | |
| 스타일번호 | |
| 시험기준 | |
| 시험결과 | |

▶ 판정결과

| | 시료1 | 시료2 | 시료3 | 시료4 |
|---|---|---|---|---|
| 종합 판정결과 | | | | |
| 비 고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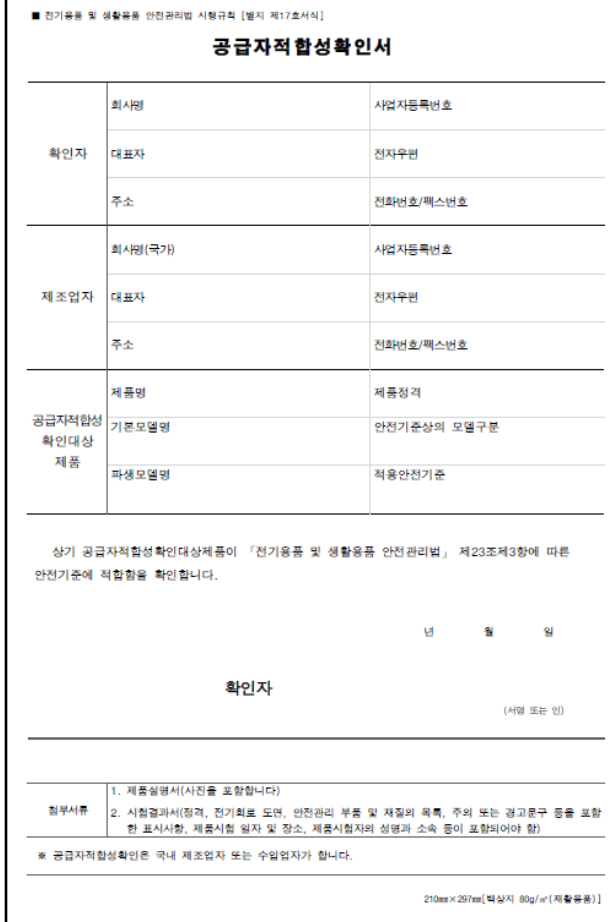
▶ 항목별 판정결과

| 시험항목 | 시료1 | 시료2 | 시료3 | 시료4 |
|---|---|---|---|---|
| pH | | | | |
| 폼알데하이드 | | | | |
| 아릴아민 | | | | |
| 아릴아민 | | | | |
| 비 고 : | | |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비고 1. 이 성적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이 성적서는 당 시험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시험성적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 | |
|---|---|---|
| 확인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업자 | 회사명(국가)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 제품명 | 제품정격 |
| | 기본모델명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 파생모델명 | 적용안전기준 |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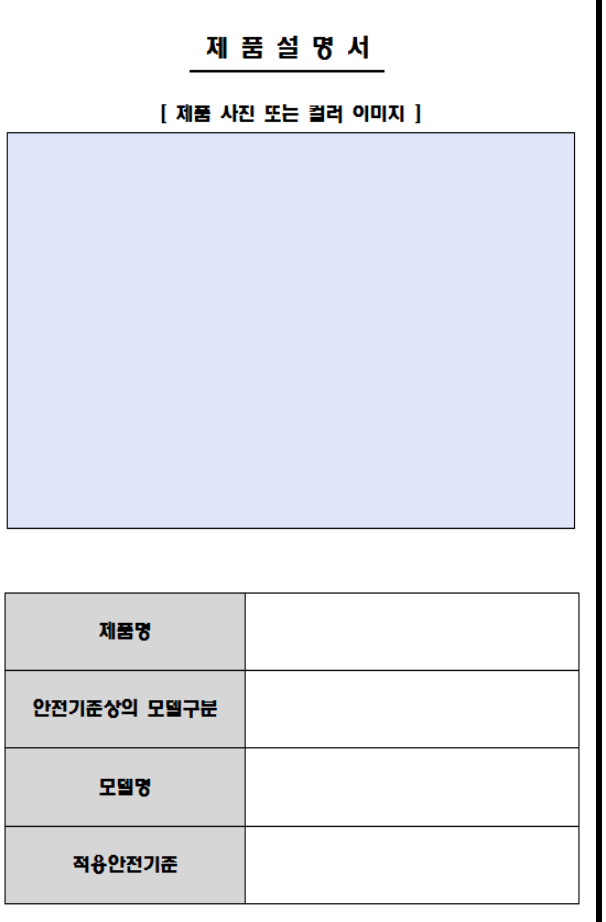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 |
|---|---|
| 첨부서류 |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br>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제 품 설 명 서

[ 제품 사진 또는 컬러 이미지 ]

| | |
|---|---|
| 제품명 | |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 모델명 | |
| 적용안전기준 | |

[제품설명서(안)]

# Ⅱ-3 | 가정용 섬유제품 구비서류

##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기재 방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①

| | | |
|---|---|---|
| 확인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업자 | 회사명(국가)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 제품명 | 제품정격 |
| | 기본모델명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 파생모델명 | 적용안전기준 |

② ③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 첨부서류 |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br>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제품설명서 및 제품설명서에 따라 수행된 시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1. 확인자 및 제조업자

☞ 국내 제조업자 : 확인자 및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확인자

2.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 제품명 :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제품명 기재)

☞ 제품정격 : 전기용품 일 경우 기재
(생활용품일 경우 공란)

☞ 기본모델명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한 표본 모델명

☞ 파생모델명 : 동일 모델 중 기본 모델 제외한 나머지 모델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등
(부속서상 모델 구분)

☞ 적용안전기준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개별안전기준 부속서 명 기재)

3. 공급자적합성 확인자

☞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Q & A

# Q&A 사이즈 표기 시 인치(inch)표기는 불법?

➢ 네, 불법입니다. SI 표준단위인 cm 로 표기해야 합니다.

(신발, 장갑은 mm 표기)

**[별표 9]**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

| 품 명 | 치수표시명세 | 제품치수 허용범위 |
|---|---|---|
| 성인 남성복의 치수 | KS K 0050에 따름 | — |
| 성인 여성복의 치수 | KS K 0051에 따름 | — |
| 유아복의 치수 | KS K 0052에 따름 | — |
|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 KS K 0055에 따름 | — |
| 팬티스타킹의 치수 | KS K 0056에 따름 | — |
| 모자의 치수 | KS K 0059에 따름 | — |
| 양말의 치수 | KS K 0088에 따름 | — |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 KS K 9400에 따름 | — |
|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 KS K 9401에 따름 | — |
| 남자 아동복의 치수 | KS K 9402에 따름 | — |
| 여자 아동복의 치수 | KS K 9403에 따름 | — |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 KS K 9404에 따름 | — |
| 기저귀의 치수 | KS K 0052에 따름 | — |
| 신발의 치수 |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름 | |
| 장갑의 치수 (mm) | 전체길이 및 나비 | 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 |
| 모포<br>이불 및 요<br>침낭<br>카페트,<br>컨트류 | 제품치수<br>가로×세로 | -3 cm |

비 고 1. 치수표시는 cm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류의 치수는 신체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작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별표 9.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전부개정] 최종공포내용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계량에 관한 법률

# Q&A 사이즈 표기 시 인치(inch)표기는 불법?

**표 1 –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

| 구분 | 의류 종류 대표명 | 예시 | 기본 신체 부위 및 표기 순서 1 | 2 | 3 |
|---|---|---|---|---|---|
| 상의 | 정장 상의[a] | 정장 재킷, 정장 조끼, 정장 코트, 피트한 블라우스 | 가슴 둘레 | 엉덩이 둘레 | 키 |
| | 캐주얼 재킷, 캐주얼 코트, 점퍼[b] | 블레이저 재킷, 기타 재킷, 캐주얼점퍼, 아노락, 등산용 점퍼, 파카, 캐주얼코트 | 가슴 둘레 | 키 | – |
| | 셔츠[b] | 남방 셔츠, 캐주얼셔츠, 캐주얼블라우스 | 가슴 둘레 | – | – |
| | 편성물제 상의류[b] | 카디건, 스웨터, 풀오버, 폴로티, 니트티, 터틀넥티, 터셔츠, 니트조끼 | 가슴 둘레 | – | – |
| 하의 | 바지 | 정장 바지[a] | 허리 둘레 | 엉덩이 둘레 | – |
| | | 캐주얼 바지[b] | 허리 둘레 | – | – |
| | 스커트 | 정장 스커트[a] | 허리 둘레 | 엉덩이 둘레 | – |
| | | 캐주얼 스커트[b] | 허리 둘레 | – | – |
| 상하 연결의 | 코트[b] | 오버코트, 탑코트, 반코트, 트렌치코트, 레인코트 | 가슴 둘레 | 키 | – |
| | 원피스[a] | 정장 원피스, 드레스, 피트한 점퍼 스커트, 피트한 오버롤 | 가슴 둘레 | 엉덩이 둘레 | 키 |
| | | 캐주얼 원피스[b], 오버롤[b] | 가슴 둘레 | 키 | – |
| | 가운[b] | 실험 가운, 나이트가운, 기타 가운 | 가슴 둘레 | 키 | – |
| 운동복[b] | 상의 | 트레이닝복 상의, 기타 운동복 상의 | 가슴 둘레 | – | – |
| | 하의 | 트레이닝복 하의, 기타 운동복 하의 | 허리 둘레 | – | – |
| | 수영복 | 전신용 수영복, 레오타드, 체조복 | 가슴 둘레 | 키 | – |
| | | 수영복 상의 | 가슴 둘레 | – | – |
| | | 레깅스, 타이츠, 수영복 하의 | 엉덩이 둘레 | – | – |
| 작업복[b] | 전신용 | | 가슴 둘레 | 키 | – |
| | 상의 | 작업용 셔츠, 작업용 점퍼 | 가슴 둘레 | – | – |
| | 하의 | 작업용 바지 | 허리 둘레 | – | – |
| 내의류[b] | 전신용 | 슬립 | 가슴 둘레 | 키 | – |
| | 상의 | 러닝셔츠, 긴팔 내의 | 가슴 둘레 | – | – |
| | 하의 | 팬티, 긴하의, 반슬립 | 엉덩이 둘레 | – | – |
| | | 페티코트 | 허리 둘레 | 키 | – |
| 잠옷[b] | 전신용 | 원피스 잠옷 | 가슴 둘레 | 키 | – |
| | 상의 | 잠옷 상의 | 가슴 둘레 | – | – |
| | 하의 | 잠옷 하의 | 엉덩이 둘레 | – | – |

**비고** 제품(쇼트 재킷, 코트 등)의 스타일에 따라 엉덩이 둘레에 대한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은 엉덩이 둘레를 제외할 수 있다.

[a]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로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강조되는 의류, 즉 착용할 수 있는 신체 치수의 범위가 비교적 좁은 의류임.

[b]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의류, 즉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착용할 수 있는 의류임.

Ex) 성인여성복의 치수 (KS K 0051)

KS K 005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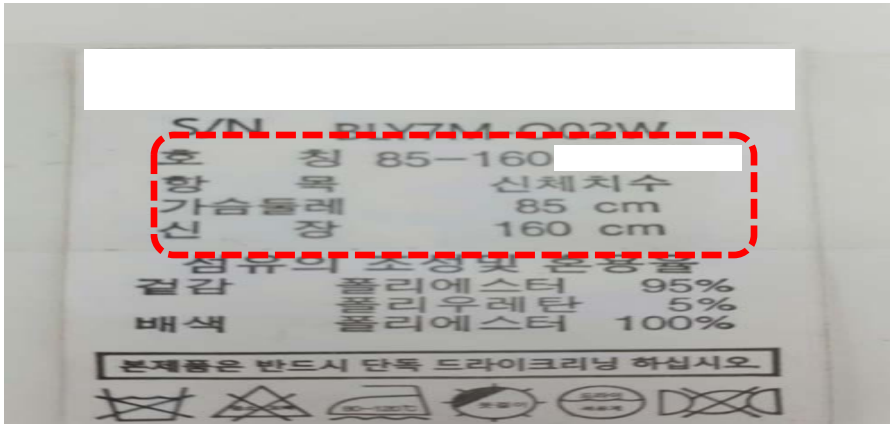
**표 8 – 캐주얼 재킷, 캐주얼 코트, 점퍼, 코트, 캐주얼 원피스, 오버롤, 가운, 기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상의 및 전신용 의류의 호칭 및 신체 치수**

단위 : cm

| 호칭 | 기본신체 치수 가슴 둘레 | 키 | 참고 신체 치수 허리 둘레 | 엉덩이 둘레 | 어깨 사이 길이 | 등길이 | 목옆 젖꼭지 허리 둘레선 길이 | 팔길이 |
|---|---|---|---|---|---|---|---|---|
| 85–150 | 85 | 150 | 72.6 | 89.3 | 38.7 | 37.1 | 39.1 | 50.4 |
| 90–150 | 90 | 150 | 77.6 | 91.9 | 38.6 | 37.6 | 40.7 | 50.7 |
| 80–155 | 80 | 155 | 66.8 | 88.5 | 38.7 | 37.1 | 39.1 | 51.4 |
| 85–155 | 85 | 155 | 71.3 | 90.9 | 39.2 | 37.9 | 39.9 | 52.1 |
| 90–155 | 90 | 155 | 76.5 | 92.9 | 39.6 | 38.0 | 40.4 | 52.3 |
| 95–155 | 95 | 155 | 82.5 | 95.3 | 40.4 | 93.3 | 41.9 | 52.7 |
| 80–160 | 80 | 160 | 66.2 | 89.8 | 39.6 | 38.0 | 39.5 | 53.1 |
| 85–160 | 85 | 160 | 70.6 | 91.8 | 39.7 | 38.3 | 40.2 | 53.5 |
| 90–160 | 90 | 160 | 75.9 | 94.4 | 40.1 | 39.0 | 41.2 | 53.9 |
| 95–160 | 95 | 160 | 81.4 | 95.8 | 40.5 | 39.5 | 41.9 | 54.4 |
| 80–165 | 80 | 165 | 66.3 | 90.9 | 39.9 | 38.9 | 40.1 | 54.7 |
| 85–165 | 85 | 165 | 69.7 | 93.1 | 40.4 | 39.4 | 40.9 | 55.0 |
| 90–165 | 90 | 165 | 74.5 | 95.6 | 41.0 | 39.8 | 41.4 | 55.0 |

**비고 1** 회색 음영 구간은 사용자 분포율이 9 % 이상의 구간을 의미하며 음영이 진할수록 사용자 분포율이 높다.

**비고 2** 신체 치수의 분포율은 표 A.10을 참조한다.




Ex) 여성 원피스 표기 예시

# Q&A 증정, 기증 또는 홍보목적의 사은품도 KC 대상품목?

➢ 네, 모두 KC 대상입니다.

[참고자료] 국표원 질의응답 관련 내용 발췌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품공법」 제19조에 의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상기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증정, 기증 또는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도 해당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함.

# Q&A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KC 마크 달면 되나요?

➢ 아니요, KC 대상 공산품에만 KC마크 및 품공법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대상 품목에 표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내용 국표원 질의응답 발췌

○ 「품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00여종의 공산품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 중. 해당 공산품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KC마크를 포함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품공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의 경우 '제품의 품질표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하여도 되나, 다만, 「품공법」에 따라 관리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문구의 삽입 또는 KC마크의 표시를 할 수 없음.

○ 또한 「품공법」에 따라 관리되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Q&A 영어 라벨은 한글 표시사항으로 변경?

➢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한글' 표기가 원칙

[근거] 관련 내용 국표원 질의응답 발췌

○ 의류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36개월 이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에 해당됨.

○ 섬유제품에 박음질 라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파우데이션류, 런닝셔츠, 펜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운동화,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꼬리표에 표시할 수 있음.

○ 표시문자도 안전품질표시사항은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시가 가능함.
(2010.07.12일자 답변)

# 감사합니다 !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장경화
K.H. Jang

* E-mail : kh3462@katri.re.kr
* Web : www.katri.re.kr